

개항 후 지방 전통 교육 체제의 변화 연구

김 태 근*

국문초록

개항 직후인 1876년부터 1894년에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개편되기까지 지방의 전통교육은 몇 차례 정비 과정을 거치며 변화되어 갔다.

조선 후기 개항을 전후하여 서구 문물이 전래되며 상대적으로 전통교육의 위상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흥선대원군 집권기 조선은 서원을 정리하며 향교와 양사재로 대표되는 지방 관학 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개항 후에는 과거제의 폐단을 절감하면서 '鄉貢保學法'을 통해 지역의 인재 선발을 시도하였다. 또 '鄉學條例'를 통해 향촌의 리, 면, 군단위로 학교를 설립하여 이를 계열화하여 교육하고 여기서 양성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였다.

함경도 덕원부 원산의 교영재는 전통적 교육 과정에 현실에 필요한 시무 교육을 실시하여 개량된 형태로 나타난 전통적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또 함경도 지방 과거시험 초시를 위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근대학교라기 보다는 조선 후기에 전국 각지에 향교에 부속되어 설립된 養士齋의 일종으로 원산향이 개항되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조선정부는 아울러 전통교육제도에 간간하여 각 지역의 교육기관들을 계열화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적·신분적인 차별을 해소하여 인재를 선발하려 하였다. '新設學校節目' 체제는 전통교육제도를 講學을 중심으로 書堂-面學-官學院-營學院-京學院으로 계열적 체계를 갖춰 정비하는 것이었다.

1893년에 실시한 '太學規制'와 儒生 月課 및 鄉貢保學法에 의한 등용은 지방의 面에서 面으로 다시 邑으로 다시 觀察使로 이어지며 지방관이 考試하고 우등자를 태학(성균관)에 추천하였기 때문에 '新設學校節目' 체제의 변형으로 볼 수도 있다.

1894년 과거제가 폐지되어 더 이상 지방의 전통교육을 통해 관료 배출이 어려워지며 지방의 교육 체제와 내용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

[주제어] 태학별단, 향공보거법, 향학조례, 원산학사, 교영재, 신설학교절목, 관학원, 태학규제

목 차

- | | |
|----------------------|--------------------------|
| I. 서론 | IV. 新設學校節目을 통한 전통교육의 계열화 |
| II. 鄉貢保學法 실행과 鄉學條例 | V. 결 론 |
| III. 養士齋의 변화와 원산 教英齋 | |

* 단국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62xorms@hanmail.net

I. 서 론

조선은 국초부터 지방 대부분 군현에 향교를 세워 공자 등 선현에 대한 향사와 지방 유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방민에 대한 교화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전국 각지에 세워진 書院이 향교를 대신하여 향촌의 사회 통제와 유교에 입각한 敎化的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관립 교육기관인 향교의 위상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단지 향사만 전담하게 되고 교육기능은 크게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향교의 교육 기능을 대신하여 양사재가 열읍의 통규처럼 설립되어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19세기 중엽 흥선대원군은 집권하면서 지방에 남설된 서원을 정리하며 향교와 양사재로 대표되는 지방 관학 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1876년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조약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서양 문물이 쇄도하고 개화를 주장하는 관료층도 증가되고 있었다. 개항 초기 개화세력 중 당시 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동도서기론자의 주장에 의해 신식학교가 세워지고 상대적으로 전통 학문의 위상은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 유림은 서양 신문물의 전래에 맞서 전통적 가치의 상징으로서 正學인 유학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향학 지침을 따르면서 전통 교육을 고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일부분에서는 지방관에 의해 시무교육을 전통교육과 함께 교육하려는 시도도 나타났다.

개항이후 전통 교육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국가 정책 중심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 구회진은 1880년대 조선 정부는 동도서기의 원칙 위에서 부국강병을 추진하면서 전통 교육과 시무 교육을 병행하는 이원적 모습으로 교육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보았다.¹⁾ 신용하는 개항 후 원산에 세워진 양사재를 민간의 성금으로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사립 교육기관으로 보았다.²⁾ 그러나 정재걸은 이 교육기관이 가진 최초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또 근대식 교육의 교재로 사용되었다는 서적이 실제 교육에 활용이 미진했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³⁾ 김경용은 향학조례를 통해 향촌의 방방곡곡까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재예를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고⁴⁾ 신학교절목을 제정한 이유로 이유는 전국의 동·리 단위 지역까지 망라하는 유기적 열개를 구성하려는 데 있었고, 관학원은 수령과 도훈장을 매개로 하여 面 단위 및 동·리 단위의 교육활동과 성과를 중앙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았다.⁵⁾

본고는 개항 직후인 1876년부터 갑오개혁으로 선거조례를 발표하여 과거제 자체를 개혁하며 지방 전통교육의 성격이 변화하는 1894년까지를 대상으로 주로 지방의 전통교육 체제가 정비되고 변화하면서 나타난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구회진, 「갑오개혁 전후 전통교육제도에 대한 정책」, 『역사교육』 100, 2006.

2) 신용하, 「우리나라 最初의 近代學校 設立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10, 1974.

3) 정재걸, 「한국근대교육의 기점에 관한 연구」, 『교육사학연구』 2·3집, 1990.

4) 김경용, 「更張期 조선, 관리등용제도 개혁과 成均館 經學科」, 『한국교육사학』 31, 2009.

5) 김경용, 「19세기말 更張期 朝鮮의 교육개혁과 官學院錄」, 『교육사학연구』 18: 1, 2008.

본고에서는 먼저 조선이 대외 문호를 개방한 이후 추진된 동도서기론에 의한 개화 정책이 서울과 지방의 전통 교육 체제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실시한 鄉貢保學法이 지방 교육에 어떻게 접목되고 이것의 영향으로 나타난 ‘鄉學條例’를 통해 지방관에 의해 전통 교육과 시무교육을 병행하는 흥학책으로 나타난 경우도 분석해본다.

두 번째로 흥학조례에 의한 흥학책을 다른 지역에 적용하면서 양사재를 변용하여 經義와 時務교육을 겸비한 새로운 교육과정의 시도를 살펴본다. 또한 전통교육에 시무교육이 가미된 가운데 이뤄지는 考試 방법의 변화 뿐 아니라 이러한 교육 결과를 전통적 관리 선발제도인 과거제도에 연관시키려는 노력도 살펴본다.

세 번째로 ‘鄉學條例’에서 제시한 리-면-읍-도-태학(성균관)으로 이어지는 교육기관의 계열화가 新設學校節目으로 정부의 정책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이 절목의 시행과정과 함께 이전의 향공보거법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정부가 실시한 太學規制가 지방의 전통 교육에 기진 영향과 이에 따른 변화도 살펴본다.

II. 鄉貢保學法 실행과 鄉學條例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 서구의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고 신식학교를 설립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과거제를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전통교육 체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개항 이전인 1860년대 말 흥선대원군은 서원 정리를 하며 한편으로 전통 학문의 교육을 강화하고 관학 기관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였다. 그 방법은 지방의 말단부터 인재를 추천하여 지방 교육 기관에서 단계적인 선발과정을 거쳐 중앙에서 考試하여 최종적으로 敍用하고자 한 것이다.

1869년 조선 정부는 ‘太學別單’을 발표하여 지방에서 중앙의 필요한 인재를 관찰사가 주관 하여 추천하면 이를 수용한다는 방침을 전국에 알렸다. 이는 성균관 유생에 대한 학정 방침의 제시 뿐 아니라 전국을 망라하여 국가에 유용한 인재를 양성하고 장차 수용한다는 대원칙을 밝힌 것이다.

‘太學別單’의 내용은 기존의 학규를 재구성함으로써 考試 절차나 학습활동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것과 성균관이 문호를 일반에게 개방하겠다는 두 가지이다. 흥선 대원군은 당시의 국가적 위기의 근원을 지배층 특히 양반 사족의 기강 이완에서 찾고 이를 쇄신하려는 방향으로 학제 정비를 추진해나갔다.⁶⁾

‘태학별단’의 10개 조항 중 지방 교육에 관련 내용은 7번째 조항이 해당된다.

7번째 「續大典」의 의거하여 지방의 리에서 邑으로 추천하고 읍에서는 監營에 추천하며, 감영에서는 詩·賦·疑義·表·策으로 직접 시험을 보고 그 시험지를 의정부에 올려 보내게 하며, 여기서 우수한 사람을 뽑아 다시 시험을 본 후 등수에 따라 敍用하게 하는 것이다.⁷⁾

흥선대원군은 서원 정리가 마무리되어가는 가운데 향교 등 관립 교육기관에 대해 확고한 위상 정립을 요

6) 우용제, 「대원군 집정기의 서원철폐와 성균관 정비계획」, 『교육사학연구』, 제2·3집, 1990, 99쪽.

7) 『高宗實錄』 6권, 高宗 6년(1869) 9월 29일, 議政府以太學別單書入啓.

구하였다. 물론 당시 천주교 유포에 대한 경계심도 함께 드러내며 전통 교육기관을 활성화하여 이에 대처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871년 6월 禮曹에 지시하여 邪說을 중식시키기 위해서는 正學을 밝혀야 하며, 正學을 밝히는 근본은 오로지 학교를 일으키는 데 있기 때문에 학교를 일으키면 위로 인륜이 밝아지고 아래로는 백성들이 화친하게 된다는 關文을 내렸다.⁸⁾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항을 통해 문호를 개방한 이후에는 서양 근대 기술의 우수함을 목격하며 교육과 관리 선발에 대한 방향 전환을 모색하였다. 1876년 12월에 고종은 幼學·生進·蔭敘·전직 관리 등에 구애됨이 없이 직무상 필요하다면 등용을 지시하였다.⁹⁾ 1882년 7월 20일에는 綸音을 발표하여 종전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실효성 위주로 관리를 선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¹⁰⁾ 1882년 7월 22일에도 윤음을 발표하여 서북인·송도인·서얼·의원·역관·胥吏·軍伍 등도 재주에 따라 顯職에 등용하겠다고 하였다.¹¹⁾

1882년 8월 5일에는 개화 윤음을 통해서 正敎를 바로 세우고 부국강병을 위해 서양의 근대 기술을 받아들여자는 東道西器의 개혁방향을 밝혔다. 아울러 각지에 세운 斥和碑도 뽑아버리라고 지시하였다.¹²⁾ 이후 정부의 개화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時務學校 설립이 필요하다는 상소가 올라오자 의정부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라고 비답을 내렸다.¹³⁾ 더 나아가서 고종은 農, 工, 商賈의 자제도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개방하도록 조치했다. 또 학교에는 才學을 중시하고 출신의 貴賤은 따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를 내렸다.¹⁴⁾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에 의해 관제를 개편하고 서구 여러 나라와 통상 교섭을 위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자 할 때, 지방에서도 향교를 통해 전통 유학 교육에 바탕을 두고 時務敎育을 병행하기 위한 학교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9세기에 이르면 봉당 정치가 파국에 다다르고 세도 가문의 발호로 科學를 통해 정상적인 인재 선발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전통적 방법으로 치루는 과거는 폐단이 많아 우수한 인재를 선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¹⁵⁾ 이에 따라 1882년 8월 13일 고종은 이해 12월에 실시하는 別試 初試는 다음과 같이 ‘鄉貢保學法’에 의하여 설행하도록 명하였다.

“근래에 科學의 폐단이 이미 극에 달하였으니, 이번 別試 初試는 鄉貢保學法에 따라 設行하라. 그리

8) 『釜山慶南鄉校記文』, 「辛未六月下澣禮曹關文」, 부산산업대, 1986, 69~71쪽.

今欲息邪說莫如明正學明正學之本唯在於興學校. 學校興則人倫明於上小民親於下治化之隆不外乎是有國大政自昔伊然而尤爲目下之急先務是如乎.

9) 『高宗實錄』 13권, 고종 13년(1876) 12월 2일

10) 『高宗實錄』 19권, 고종 19년(1882) 7월 20일

11) 『高宗實錄』 19권, 고종 19년(1882) 7월 22일

12) 『高宗實錄』 19권, 고종 19년(1882) 8월 5일

其器則利, 苟可以利用厚生, 斥其敎而效其器, 誠能內修政敎, 斥洋碑刻時措有異故並行拔去.

13) 『高宗實錄』 19권, 고종 19년(1882) 8월 23일, 幼學池錫永疏略.

14) 『高宗實錄』 19권, 고종 19년(1882) 12월 28일.

15) 『高宗實錄』 19권, 고종 19년(1882) 9월 27일.

하여 八道の 道臣들은 列邑에서 널리 채집하여 蔭仕, 生員, 進士, 幼學, 閑良 중에서 才德이 평소에 뛰어난 자를 선발하되, 文科는 孝廉, 學術, 才諳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武科는 兵學, 武藝, 勇力의 세 부분으로 나눈 다음 이름을 열거하여 馳啓하라. 서울에서는 漢城府로 하여금 선발하여 아뢰어 모두 都城에 모아 文武로 나누어 試取하게 하되, 문과는 程式에 구애하지 말고 질문에 따라 對策을 올리게 하고, 무과도 이름 순서대로 기예를 비교해 능한 자를 뽑게 하라. <중략> 廟堂(의정부)으로 하여금 적절하게 헤아려 분배하여 啓聞하게 한 다음 팔도와 한성부에 行會하게 하라.”¹⁶⁾

의정부에서는 다시 이 같은 고종의 전교를 담은 關文을 전국 각 고을에 내렸다.¹⁷⁾ 이에 따라 수령들은 ‘향공보고법’에 의한 인재 선발을 모색하면서 한편으로 지방의 관학 교육체제에 대한 개혁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1882년 10월 13일 당시 慶州府尹 鄭顯奭은¹⁸⁾ 의정부에서 내려온 ‘鄉貢保學法’ 設行에 대한 下敎文과 함께 ‘鄉學條例’까지 만들어 府內 각 里의 塾長에게 전달하여 정부의 의지를 알렸다.¹⁹⁾

정현석이 작성한 이 문서에는 孔子의 道를 지키고 서양의 기술을 가르쳐한다는 동도서기론에 의해 교육하여 부국강병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고 하였다.²⁰⁾ 이 문서에 포함된 ‘鄉學條例’에는 1882년의 ‘慶科’²¹⁾부터 鄉貢保學法에 의한 別試 시행을 지시한 고종의 전교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현석은 지방에서 里-面-郡-監營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계열화를 시도하고 있다. 각 里·鄉(面)·鄉校(郡)에 각각 塾長·庠長·序長을 두고 儒蔭子弟·凡民俊秀 중 열 살 남짓에서 스무 살 남짓의 총명한 인물을 塾生으로 삼아 가르치게 하였다. 교육과정도 소학이나 사서·오경 등 전통적 교과 이외에 ‘萬國政誌’·‘格致’·‘算數’·‘器械演習’·‘銃砲’ 등 새로운 분야도 포함하고 있다. 전통적인 經學과 新學問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으로 숙생을 가르치고, 그 중 우수한 자를 庠長에게 올리고, 庠長이 考講·試製하여 우등한자를 序長에게 올리면, 序長이 또한 考試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 역시 고시하여 우수한 자를 관찰사에게 추천함으로써 인물을 키우고 조정에 등용되는 성취를 하라는 것이다.²²⁾

이 ‘鄉學條例’는 鄉貢保學法에 따라서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인재선발을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므로 향촌의 리, 면, 군단위로 학교를 설립하여 이를 계열화하여 교육하고 여기서 양성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을 규정하였다. 이는 관립 교육기관인 鄉校가 지방 교육을 주도하도록 재정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교육 내용도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時務學을 포함하였다. 인재 선발은 他薦의 형식을 가지면서 그 기준이 經學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개항 이후 새로이 요구되는 時宜에 적절한 인재인가, 신구학문을 겸비

16) 『高宗實錄』 19권, 고종 19년(1882) 8월 13일

17) 김경용, 「경장기 조선, 관리등용제도 개혁과 성균관 경학과」, 『한국교육사학』 31: 2, 2009, 6쪽.

18) 『承政院日記』 고종 19년(1882) 6월 18일.

19) 『古文書集成』 62, 牒關通報類,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179~182쪽.

20) 今日之我所守者萬世不變孔子之道也我所教者彼之格致·機器·算數·農桑·鐵砲之類也.……惟我大小民成禮聖意其各勉勵而於富強之道居常講究其有卓識異才互薦于官.

21) 『高宗實錄』 19권, 고종 19년(1882) 2월 23일, 당시 世子인 純宗의 入學과 冠禮를 치루며 실시한 別試.

22) 『古文書集成』 62, 牒關通報類,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181~182쪽.

한 인물인가를 따졌다.

정현석은 1882년 10월 13일 경주부에서 향학조례의 실시를 발표하였지만 시행할 여유도 없이 같은 해 11월 20일 함경도 德源府의 府使로 임명되었다.²³⁾ 이후 경주부에서 향학조례에 따르는 시무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설립되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Ⅲ. 養士齋의 변화와 원산 敎英齋

조선 후기 전국적 대부분 지역에서 건립된 양사재는 군·현 단위의 새로운 학교로 자리를 잡아 나갔다.²⁴⁾ 양사재는 지역에 따라 20세기 초까지 설립된 곳이 있으며 설립자들이 대부분 수령인 것으로 봐서 향교의 강학기능을 진흥시키며 관학의 부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었다.²⁵⁾

양사재는 대부분 먼저 재정을 확보하고 설립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수령이 중심이 되어 재정을 모으고 향촌 유림들이 힘을 모으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²⁶⁾ 한편으로 조선 후기 철회된 書院이나 祠宇의 재산이 귀속되면서 확충되기도 하였다.²⁷⁾

개항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유입된 신문물에 대항하여 지역 유림들이 전통적 유학의 상징으로 향교의 기능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양사재 설립에 나선 경우가 있었다. 한편으로 개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동도 서기론에 의한 시무 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양사재도 등장하였다.

咸鏡道 德源府의 元山港은 개항장이며 군사적 요충지로 이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원산향에서는 富強之業을 이루려는 정부의 興學 정책에 부응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새로운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덕원부의 방침은 향교와 별도로 다른 學舍를 세워 전통적 유학 교육으로 기본을 다진 뒤 시무를 학습시켜 인재로 활용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²⁸⁾ 이에 따라 전통적 유학 교육을 실시하는 향교를 정비하였으며 時務를 가르치는 學舍도 함께 신설하였다.

먼저 덕원부에서는 유생의 義捐으로 鄉校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덕원향교의 교육기능은 이전부터 피폐하여 朔望 焚香 비용과 春秋 釋奠의 예절을 다하면 養士 비용은 거의 조달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戶結錢 중 300兩을 劃付하고, 또 향교에서 錢穀 등을 모금했다. 이어 邑內 儒生 8명이 4천 2百兩을 義捐하여 전답을 매입하고 稅米 花利로 향교의 設學 비용을 충당하였다.²⁹⁾

23) 『承政院日記』, 1882년(고종 19년) 壬午, 11월 20일.

24) 이성심, 『조선 후기 지방교육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2017, 70쪽.

25) 강대민, 「조선 후기 養士齋 構成員의 身分에 관한 소고」, 『문화전통논집』 3, 1995, 14쪽.

26) 『湖南邑誌』 순창부읍지; 광양현읍지.

27) 『湖南邑誌』 潭陽府邑誌, 읍사례.

28) 『春城府志』, 學舍朔試規, 1885, 先明正學 以立其大本 次習時事 盡其大用.

29) 『春城府志』, 鄉校設學節目, 1885.

다음으로는 時務 관련 학문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신설한 것이다. 당시 덕원부사 정현석은 1883년 8월 28일에 議政府에 狀啓를 보냈다.

이 장계에서 정현석은 가까운 시일에 元山社에 學塾을 세워 향민들의 의견금을 모아 교사를 초빙한다고 하였다. 또 文士는 먼저 經義를 가르치고 武士는 兵書를 가르친 다음에는 문무반 모두 算數, 格致에서 여러 가지 機器, 農蠶, 鑛採 등 시무에 관한 긴요한 내용을 가르친다고 하였다.

學生들의 試驗은 文藝班은 매달 朔試를 보게 해서 최우수자 1명을 뽑아 매년 가을에 道の 監營에 보고하면 公都會에 붙여 解額해달라고 하였다. 武藝班은 東萊府의 규례를 본받아 兵書를 鍊達한 후 射擊을 배워 出身과 閑良 200명을 선발하고, 別軍官을 처음으로 두어 달마다 의무적으로 시험을 보아 施賞한다. 本府에 있는 親騎衛 44명은 이중으로 부릴 수 없게 하고, 특별히 각 고을에 移定하고 別軍官의 朔試는 計劃하여 연말에 우등을 한 2인을 兵曹에 보고하여 出身에게는 특별히 折衝將軍을 加資하고, 閑良은 특별히 直赴殿試하게 할 것을 特許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의정부에서는 1883년 10월 20일 윤허한다고 답하였다.³⁰⁾

덕원부에서는 이에 따라 教英齋³¹⁾라는 학교를 乙酉年(1885년)³²⁾에 원산향 南山洞에 위치를 정해 세웠다. 교영재에는 教授 1명, 掌議 2명, 掌財有司 2명을 두었다. 이중 장의와 유사 2명 중 각 1명은 현지 儒生 중에서 추천받아 선출하였으므로 향교와 관련을 두고 운영되었던 것이다.

교영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學舍節目’을 제정하였다. 이 節目에서 세상이 급변하여 많은 일이 생기고 있어 智力을 서로 숭상하며 나라의 富強之業을 위해 興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元山社에 학교를 세우고 우수한 자를 뽑아 교사를 연방하여 가르치고 父老들이 재산을 내게 하여 인재를 길러 조정에서 才藝를 수용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교영재에는 『瀛志』 6권, 『聯邦志』 2권, 『奇器圖說』 2권, 『日本外國語學』 1권, 『法理文』 1권, 『大學豫備門』 1권, 『瀛環志略』 10권, 『萬國公法』 6권, 『心史』 1권, 『農政新編』 2권 등 개화 관련 서적을 비치하여 時務 교육을 위한 교재로 이용하였다.

교영재에는 鄉中의 준수하고 聰敏한 자는 물론 非契員도 입학할 허가했다. 타읍민도 農糧을 가져오면 막지 않았다. 교육은 狀啓文에 올린 바와 같이 시무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은 규율을 정해 위반하면 경중에 따라 퇴출하거나 벌을 주었다.

30) 『春城府志』, 興學, 1885.

『高宗實錄』1883년(고종 20년) 10월 14일 조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31) 教英齋에 대한 선구적 연구는 慎鏞廈, 「우리나라 最初의 近代學校 設立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10, 1974. 이다. 이 논문에서 인용하는 이 학교를 ‘元山學舍’로 명명하였으며 이후 연구자들이 후속 연구를 진행하며 이 명칭을 계속 썼다. 그러나 이 학교에 대한 유일한 사료인 『春城府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당시의 명칭은 ‘教英齋’였다. 『皇城新聞』 1901년 4월 15일자 기사인 學校規則에 1901년 덕원향공립소학교에 教英齋 재산을 移屬한다고 하였고, 『조선신사보감』에도 함남 高原人 김낙철이 교영재를 졸업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공식 명칭 역시 교영재로 보인다. 구희진, 「갑오개혁 전후 전통교육제도에 대한 정책」, 『역사교육』 100, 2006.에서 이 학교의 명칭을 교영재로 하였다. 본고에서도 교영재로 사용하고자 한다.

32) 교영재의 개교에 대해서 慎鏞廈(1974년)는 덕원부사 정현석이 1883년 8월 28일 장계를 올린 것은 이미 설립한 학교에 대한 승인 요청이고 같은 해 10월 20일 윤허한다고 한 것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狀啓에는 ‘近日’ 숙사를 세운다고 했으며, ‘學舍節目’에는 1885년인 ‘乙酉年 創建’으로 되어있다.

이전 다른 곳의 양사재 처럼 교영재 설립에 가장 많이 義捐한 사람들은 元山の 父老들이었다. 南啓夙 이하 118명의 향민들이 도합 5,325兩의 개별 出財를 하였으며, 향민의 대부분은 관직을 지냈거나 幼學 신분으로 향교에 儒生으로 籍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元山 中里 七洞과 上里 七洞의 주민들이 240兩을 자진 각출하고 매년 200兩의 경비보조를 하였으며, 元山商業會議所가 50兩을 보조하였다. 官吏로서는 德源府使 鄭顯奭이 100兩, 西北經略使 魚允中이 100兩, 承旨 鄭憲時가 100兩 등 합계 300兩을 기증하였으며, 이들 3인은 교영재 설립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韓國人의 出資額은 모두 6,015兩이 되었다. 外國人으로서 元山海關의 관리로 고용되었던 中國人·美國人 등이 700兩 이상을 찬조하였다.³³⁾

교영재 설립을 주도한 덕원부사 정현석의 직전 직책은 경주부윤이었다. 그는 경주에서 향학조례를 반포한 지 1달만인 11월에 덕원부사로 부임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향학조례를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갖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학조례에 대한 경험은 새 부임지에서 시무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덕원부사로 온 정현석은 경주의 향학조례를 참조하여 개항장으로 인구가 급증한 원산에 학교를 세우고자 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은 향학조례에서 제시한 것처럼 正學이외에 算數·格致로부터 각양의 기기와 農蠶·礦採 등 시무학을 학습하게 하였다.

교영재에서는 경의와 시무로써 시험 치도록 하는데, 매달 점수의 합산이 높은 자를 뽑아서 解額에 넣는 일은 이미 登聞하여 윤희를 얻었다. 매달 초마다 경의와 시무에서 두 문제를 내어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합산점수를 건주는 것을 정식으로 삼아 다시는 詩賦로써 出題하여 試取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 학사를 세운 것은 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며 반드시 경의와 시무로써 교육할 것이며, 그 요체는 먼저 경학을 밝혀서 그 大本을 세운 다음 時事를 익혀 그 大用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서 一鄉의 부형이 그 자손을 위한 百世之計로 삼고자 했다. 따라서 학교 건물의 창건과 교사의 보수 및 학비는 그 부형들이 마땅히 힘을 극진히 하여 出助해야 한다고 했다.³⁴⁾

교영재에서는 정현석이 1883년 8월 의정부에 장계를 올린 내용과 같이 문예반과 무예반 모두 科學를 염두에 두고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교영재의 기본적 교육 목표는 전통적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고 시무 관련 지식을 습득하며 과거에 합격하는데 있었다. 이와 함께 정현석이 올린 장계와의 관련성을 더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1885년에 함경도 設科額數 가운데 덕원부가 속한 關南은 原額 50명에서 20명을 늘려 70명으로 額數가 증대되었다.³⁵⁾

교영재에서 공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유생 중 1명은 일종의 초시 합격이라 할 수 있는 公都會에 解額될 수 있었다. 무사들도 2명이 出身과 閑良이라는 품계에 따라 승급되거나 殿試에 直赴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교영재를 졸업하고 향교의 齋任, 掌儀를 역임하는 경우도 있었다.³⁶⁾

33) 『春城府志』, 學舍節目, 1885.

34) 『春城府志』, 學舍朔試規, 1885.

35) 『高宗實錄』 22권, 고종 22년(1885) 4월 25일.

36) 『朝鮮紳士寶鑑』 紳士 312, 국사편찬위원회.

김낙철은 함남 고원출신으로 향교의 교영재를 졸업하고 고원향교 임원을 역임하였다.

교영재는 전통적인 과거제도와 교육과정과는 차별성을 가졌다. 문무과 모두 時務學을 함께 배우고 종래의 詩·賦 考試를 폐지하여 다시는 이 같은 시험을 치르도록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시험 출제도 경학과 시무에서 각각 출제하였으며 학교 졸업시험을 과거 고시의 한 단계로 공인하여 시무에 대한 소양도 평가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런 새로운 양식의 교육과 고시를 지방적 차원에서나마 제도적으로 공인한 것이다. 이는 원산의 1개 학교나 덕원부의 차원이 아닌 조선의 조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심스런 정책 실험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³⁷⁾

결국 교영재의 설립 목적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근대적 사립학교로 규정하기 어렵다.³⁸⁾ 교영재의 시무 교육은 원산항이 개항장이라는 특수적 환경 속에서 부수적 교육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전문적 시무 교육을 받고 해당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교육이 아닌 것이다. 교영재의 시무 교육은 원산항이 개항장이라는 시공간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근대 문물을 상식적 지식으로 습득시키기 위한 정도일 것이다.

교영재에는 비슷한 시기에 설립한 同文學이나 育英公院과 같은 공립 교육기관이나, 선교사가 설립한 培材學堂 같은 사립 교육기관 처럼 근대적 교과와 근대적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진의 초빙이나 배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

‘學舍節目’에서 제시한 교영재에 비치된 시무 교육관련 서적들은 학생들이 졸업 후 해당 분야에 진출을 위한 전문 교재로 사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문무과 별로 각각 經義와 兵書를 공부한 다음 긴요하고 교양 정도의 시무교육을 위한 참고용 도서로 생각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책들이 교영재가 설립되어 초기 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는 아직 보급이 안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책 가운데 『農政新編』은 저자인 안중수가 1881년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갔다가 일본의 농학자 津田仙과 교류하고 돌아와 1885년 4월에 간행한 책이고, 그 외에 다른 책들도 이보다 조금 앞서 서울에서 간행되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원산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³⁹⁾

이처럼 교영재는 이 시기보다 앞서서 列邑의 通規처럼 전국 각지에 설립된 養士齋와 공통점이 많다.⁴⁰⁾ 교영재는 科擧 入格이라는 전통적 교육상의 목적으로 향교를 통해 설립되었다. 또한 月例 評價인 朔課試도 鄕校와 함께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⁴¹⁾

이를 보면 교영재는 養士齋가 당시 元山社 지역이 개항장이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변형된 형태로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항 후 향교에 의해 설립된 학교 중 선구적으로 근대적 문물을 소개한 학교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영재는 鄕校나 養士齋 등에서 실시한 전통적 교육 과정에 시무 교육을 가미하여 개량된 형태로 나타난 전통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

37) 김경용, 「更張期 조선 관리등용제도 개혁과 成均館 經學科」, 『한국교육사학』 31: 2, 2009, 8쪽.

38) 慎鏞廈, 「우리나라 最初의 近代學校 設立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10, 1974, 195~197쪽.

이 논문 이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교영재(元山學舍)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로 보고 있지만 교영재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라는 주장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39) 정재길, 「한국근대교육의 기점에 관한 연구」, 『교육사학연구』 2·3집, 1990, 112쪽.

40) 다른 양사재처럼 교영재도 고을 수령이 주도하며 지역 유생과 有志가 의연하여 鳩財하고 향교와 연관성을 가지고 운영되었다. 학교 교수진이나 실무진도 양사재와 유사하게 배치되어 있다.

41) 『春城府志』, 學舍朔試規, 1885, 學舍朔試規 鄕校同.

IV. 新設學校節目을 통한 전통교육의 계열화

개항 이후 신문물의 수용과 개화와 정부가 주도하여 신식학교를 설립하였지만, 지방 유림이 고대하던 官學 부흥 정책은 지지부진하였다. 이에 향촌의 유림들은 신문물을 異端邪說로 규정하고, 이는 하늘이 펼친 이치를 멈추게 하고 백성의 준칙을 흐트러지게 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교학진흥의 노력은 계속 방치되고 있었다.⁴²⁾ 당시 향교 중 재정이 고갈되어 향사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양사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⁴³⁾

이러한 상황 하에 유학 사상을 정비하며, 서당의 확산으로 드러나고 있는 民人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지방의 교육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생겼다. 또한 당대의 과제인 교육의 실용성을 높이고 時務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국가적인 개편과 체계화가 필요했다.⁴⁴⁾

정부에서는 이에 보조를 맞추고자 內務府를 통해 당면의 시무에 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育英公院設學節目’을 만들어 育英公院을 설립하였다. 또 한편으로 전통 유학 교육기관들을 講學 기능 중심으로 정비하고 계열화하여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교육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新設學校節目’을 반포하였다.

高宗은 1886년 4월 19일 傳敕을 내려 국가운영의 기준이 유교사상에 기반을 두고 ‘義理’를 실천하는데 있음을 천명했다. 고종은 특히 ‘凡民’의 자제라도 체계적으로 교육받아야 교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閭里 村坊까지 講舍를 설립하는 구체방안을 內務府로 하여금 마련하게 했다.⁴⁵⁾

이에 따라 內務府에서는 유학의 진흥을 위하여 향교를 기반으로 학원을 창설한다는 14개조의 ‘新設學校節目’을 마련하여 고종의 윤허를 받아 關文으로 전국에 내렸다. 그 서두에 이 관문을 하달받자 마자 해당 향교·양사재의 수용능력 및 재정을 확보하되, 전부터 유지되어 온 田結로부터의 수입을 낱알이 조사하여 보충하고, 만약 재정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읍(郡·縣)의 경우에는 監營과 邑에서 일정한 조치를 내릴 것이며, 선비들의 학습 활동에 대한 제반 규칙은 關文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정하여 신속히 보고하라는 지시를 엄중히 제시해 놓았다.

이 節目의 1항~3항은 성균관에 관한 규정이며, 4항~7항은 都城의 京學院에 관한 규정이며 8항~11항은 營學院과 官學院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였다. 12항은 私塾에 관한 규정이며, 13항은 初試를 실행하는 규정이며, 14항은 附則 규정 같은 것이다.⁴⁶⁾

一. 成均館 生進依圓點數八十以內 揀選居齋無闕 冬春爲明經講義 夏秋爲製述文字 以本興學首善之意 是白齊. 一. 爲月課法〈七書中自願一書 抽三節問義 製述 則詩·賦·表·策中每朔一度輪回出題〉每朔終

42) 山淸鄉校, 「明倫堂重修記」, 1881.

嗚呼 人類之生久矣 物慾之蔽衆矣 異端邪說 又從而害之者 莫今時若焉 順天紋之理 或幾乎熄矣 民弊之則 蔑得以正矣 明倫之事 於是乎 急急矣.

43) 『春城府志』, 鄉校設學節目.

44) 구희진, 「갑오개혁 전후 전통교육제도에 대한 정책」, 『역사교육』 100, 2006, 201~203쪽.

45) 『高宗實錄』 23권, 고종 23년(1886) 4월 19일.

46) 『官學院錄』, 「內務府關下帖」 新說學校節目, 1886,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泮長詣泮宮 考取抽性計劃 爲季考法(式上同) 每季朔終同成均泮長合席考取計劃 爲歲試法(式上同而講製俱試) 每歲終文衡(如文衡有闕文任考取)同成均泮長并爲考取 而文衡主考計劃 擇優修榜啓聞是白齊. 一. 每於月課·季考試之日 四學之徒 亦許赴考(講則背講)而另爲計劃 擇其最優者 許赴文武科是白齊. 一. 都城內建置學院 曰京學院 選士民子弟才質聰明年十五至二十餘者 不拘多數入院 記名往來肄習(講製節次一如泮試 而循序漸進不至獵等) 每三十人限十日住院學(限滿則輪回相代如逆番例) 自院饋給 而切不惟閒暇浪遊有名無實是白齊. 一. 四學教授每十日輪回赴院(如入直例) 掌教訓學法 每於月課 當直教授聽考試計劃 季考 則四員合席計劃 歲試 則俱率學徒赴泮試是白齊. 一. 置書記一人 傳掌院內文簿支應等節 置大廳直二人 使令一名 使掌院內使喚 置水工二名火工二名 使掌院內供役是白齊. 一. 院內薪水膏火之資 每朔三千兩式 自宣惠廳劃付於書記 以供支應 而詳錄出入 教授查檢 每於朔終呈于文衡 按簿署押 隨宜酌定是白齊. 一. 八道四都各營例有儒生居接所(若無則以公廳變通) 自該營酌量修葺 曰營學院 各邑則自有校宮而如不能容自酌量添建 曰官學院 而各營邑古有養士廳學劃結所收(名目不同而或無此之邑則營邑爛商措劃) 然若有虧欠一切查充 爲課學實用之方是白齊. 一. 各營邑學院學徒 擇其本地士民子弟 才質聰慧年十五至二十餘者 幾人量宜定額 限三年肄習 限滿則各歸私塾 更爲新選定額 而雖或額外 自備薪水負笈願從 亦不拘多數是白齊. 一. 擇其境內人地學識拔萃者 三員以爲訓長 每三朔式通任學院 課訓學徒 而本境如乏可堪之人 自可延致於他境是白齊. 一. 講製節次計劃分等 一邊京學院例 而但歲試時 營學院則道伯主之 官學院則邑倅主之 自邑報營 自營都聚報于成均館 記名存查是白齊. 一. 無論京各道村坊間里 如有出力而私設學塾 興勸學徒 以爲實效者 隨聞登報 酌宜收用是白齊. 一. 三年大考 擇期設初試取 鄉漢城學院每歲啓京中 訓長及優等人 并分日面試第其高下 許赴會試是白齊. 一. 未盡條件 追後磨鍊是白齊.

위의 신설학교절목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新設學校節目」 운영 개요

명 칭	위 치	입학 자격	교육 과정	교 수
京學院	漢 城	15~20세 士 · 民子弟 無定額 30명씩 住院 10일마다 교대	冬春：明經講義(七書) 夏秋：製述文字(詩賦表策) 月課 · 季考 · 歲試 季考：교수 4인 합석 歲試：赴泮(成均館)合試	四學 教授 10일마다 교대
營學院	道(監營)	15~20세 士 · 民子弟 定額 3년 수학 후 歸 私塾 자비부담자 無定額	京學院과 같음 歲試：觀察使 주관	訓長 3인 석 달마다 교대
官學院	郡, 縣	15~20세 士 · 民子弟 定額 3년 수학 후 歸 私塾 자비부담자 無定額	京學院과 같음 歲試：守令 주관	訓長 3인 석 달마다 교대 인접 지역에서 統轄 가능
私 塾	洞 里	京 · 各道 村坊 · 閭里에 私塾세워 學徒 勸勉하여 實效者 報告 酌宜收用		
기 타	營 · 官學院 歲試 결과는 觀察使 취합 成均館에 보고, 大考에 初試시행, 京鄕 學院에서 매년 訓長 優等人 京中에 報告, 面試 성적 高下따라 許赴全(會?)試 ⁴⁷⁾			

‘新設學校節目’에 의하면 종래 전통교육을 담당하던 교육기관에 대한 일대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하지만 이전까지 조선의 교육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앙의 成均館과 四部學堂 및 지방의 營學이나 鄉校를 활용하는 교육제도였다.

이 절목에 의해 한양에 신설된 京學院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生員과 進士 가운데 뽑아 居齋토록하는 성균관보다는 수준이 낮은 교육기관이었다. 입학자격도 15세~20세의 士民 자제였으며 교육과정은 성균관과 같지만 교수진은 四學에서 왔으며 學徒의 月課와 季考를 자체적으로 맡았다. 다만 歲試만 학도를 모두 인솔하고 성균관에 가서 合試할 수 있었다.

營學院과 官學院은 監營과 郡·縣에 각각 설치하였는데 시설은 영학원은 監營의 儒生居接所를, 관학원은 해당 郡·縣의 鄉校를 이용하도록 하였다.⁴⁷⁾ 교육과정은 경학원을 비롯하여 영학원과 관학원이 모두 비슷하게 운영하였다. 그러나 歲試는 각각 달라서 경학원은 성균관과 合試하였지만 영학원은 觀察使가, 관학원은 守令이 각각 주관하였다.

‘新設學校節目’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新設學校 모두 각각 별도로 月課와 季考를 거치지만 매년 보는 歲試의 평가 결과는 모두 成均館에 보내졌다. 여기서 優等人은 3년마다 大考에 面試를 통해 初試를 실시하였으며, 성적의 고하를 따져 會試에 直赴되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곳을 마친 후 會試에 入格하여 生員이나 進士가 되어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文科에 응시하거나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종이 유교 윤리를 국가운영에 기본을 두고 민인의 교육을 위해 이와 같이 전통 교육기관을 재정비하고 학교를 신설하였지만 재정은 풍족하지 못했다. 외국어 교육을 위해 근대식 학교로 설립한 육영공원은 매달 6,000兩씩을 戶曹와 宣惠廳에서 절반씩 나누어 재정보조를 받았다.⁴⁹⁾ 그러나 경학원은 거기에 절반 정도인 매달 3천兩씩을 선혜청으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았다. 지방에 설치된 영학원과 관학원은 해당 지역의 養士 비용인 贍學田에서 재정을 충당하라고 하였지만 부족하여 지방민이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도 있었다.⁵⁰⁾

‘新設學校節目’에서 영학원은 각 監營의 유생거점소를 이용하여 설립하라고 하였는데 이 유생 거점소는 조선 후기 道 단위의 강학기관인 營學을 이르는 것이다. 영학은 조선 후기 지방에서 군현에 설치된 養士齋와 같이 감영의 居接 강학기관으로 설립되었는데 지역별로 설립 시기와 명칭이 달랐다.

영학원은 경상도의 樂育齋, 전라도의 希顯堂, 평안도의 長都會, 함경도의 養賢堂, 황해도의 思皇齋 등 기존의 營學을 활용하였다. 충청도는 기존의 영학이 있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1887년 작성된 충청도 공주의 「營學院居齋節目」을 보면 ‘新設學校節目’에 의해 새롭게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충청

47)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원본 『官學院錄』에는 ‘奎試’로 되어있는데, 문맥상 ‘會試’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會’자를 옮겨 적다 ‘奎’자로 오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8) 『赤城誌』, 學校, 1898, 규장각 소장.
全羅道 茂朱에서는 양사재인 時術齋를 관학원으로 이용하였다.

49) 『高宗實錄』 고종 23년(1886) 8월 1일.

育英公院設學節目 一, 薪水膏火之節, 酌量磨鍊, 每朔六千兩式, 自戶, 惠廳分半畫下, 以爲院內供給, 而各項簿牒支應等節, 每於朔終入下, 數文該掌昭詳成冊, 先經主事考察後, 呈于堂上, 署押以憑後考.

50) 慶尙道 咸昌縣에서는 官學院 비용을 齋任助學錢, 校生免役錢, 門中助學錢으로 충당하였다.

구희진, 「갑오개혁 전후 전통교육제도에 대한 정책」, 『역사교육』 100, 2006, 205쪽.

도의 營學院에는 훈장 1명과 거재생이 15명이 있었으며 1892년까지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⁵¹⁾

경기도와 강원도는 조선 후기의 영학이나 新設學校節目에 의한 營學院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京畿 監營이 都城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의 유생은 京學院에 입학하였을 수도 있다.

‘新設學校節目’에 의해 각 감영에서 영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절목을 만들었듯이 각 군현도 감영에서 내려 보낸 甘結 등에 의해 鄕校에서 ‘官學院節目’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지방에서 군현 단위로 작성된 官學院節目으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大邱府에서 1887년에 작성된 것이 현재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다른 지역 관학원의 운영 모습을 유추할 수 있을 수 밖에 없다. 대구부의 ‘官學院節目’ 앞에는 慶尙 監營에서 대구부에 내린 지시 사항도 함께 있다.

監營에서는 才德을 겸비한 인사가 있으면 보고할 것, 절목대로 課試學業을 준행할 것, 향교나 양사재의 수용능력과 재원 확충 등의 조치 이행에 대한 진말을 자세히 보고할 것, 이 甘結이 도착한 일시를 우선 보고할 것, 帖文을 내려 지역의 유생들이 일일이 보게 하여 講舍를 세우고 학업을 권장하도록 하는데 그 진행 상황을 즉시 보고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대구부에서 1886년 3월에 ‘官學院節目’을 작성하였다.⁵²⁾

一.訓長薦報二員 以宿望實行人爲定 每朔交番訓誨事. 一.儒生 以聰明才藝年十五至二十餘者 選十二員爲定事. 一.儒生 每以四員 限十日居院 一朔三通番事. 一.儒生 限三年後更爲新選 而雖或額外 自備資糧負從者 不拘多數聽許事. 一.月課 七書中自願一書抽三節問義 製述則詩賦表策中夏三朔考藝事. 一.月課當番時 無故不參者 再犯則出案 如有實故 先期具由呈單于訓長事. 一.學院所用財 以養士齋每年應入條 一百三十四兩二錢果 校中應入錢中 用餘三百餘兩式 入院排用事. 一.諸儒供億之節 每員一日四錢二分式 訓長一員 儒生四員 合下二兩一錢事. 一.柴油 每日二錢四分事. 一.白紙 每月三十張 製述時 每日每員一張. 一.房奴二名 一年料 各十兩事.

대구향교는 감영으로부터 帖文을 받고 상기의 ‘官學院節目’을 만들고 이어 學規 12조항을 작성하여 대구부 소속 각 면의 면소에 帖文으로 내려 보냈다. 面學院에 대한 규정도 현존하는 것은 대구부에서 1886년 3월에 작성한 것이 유일하다.

대구향교는 향교에 관학원을 설치하고 또 각 면에 지시하여 面學院을 설치하여 강학을 하라는 帖文을 받았다. 이에 학규 12조목을 만들어 각 面所의 講院에 전달하고 일이 진행되는 실상을 즉시 보고하라 하였다. 면학원은 학도의 學案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감영에 보고하고 나머지는 講所와 관학원에 각각 비치하였다.⁵³⁾

一.各面 擇年德俱卻文行拔萃者 一員以爲訓長 而面內如乏可堪 合三數面而定訓長是齊. 一.儒生 擇本面士民子弟 才質聰明敏年十五以上至二十餘歲 不拘定數 修成學案 而不參學案者 不許學(參榜

51) 『조선사회사자료』 2. 公州, 「營學院居齋節目」, 居齋錄, 居齋記(1887.2), 「接節目(1888.4.; 1889.2.), 節目(1889.5.; 1892.3.)

52) 『官學院錄』 「官學院節目」 丁亥 三月 日.

53) 『官學院錄』 「各面勸講十二條下帖」 丁亥 三月初六日.

則拔去三十以上則勿論〉成案後 一件官上 一件置本面講所 一件置學院是齊. 一. 每月季 該面訓長及諸生 齊會講所後 訓長坐堂之北壁 諸生分東西序立于庭 相揖以次揖讓升北面序立 拜訓長訓長答揖 罷座時亦如是齊. 一. 開講時 使善讀者一人 詣書卓前 跪抗聲讀白鹿洞規・呂氏鄉約 諸生皆肅然聽之是齊. 一. 七書中自望一帙書臨講 而抽三節問義錄其起止及通畧粗不 以計畫考其勤慢是齊. 一. 夏月科製時 亦相試藝是齊. 一. 諸生 無故不參者 一一三犯罰案停學 如有實故 其由呈單于講所是齊. 一. 四季望面各拔其優等者一二人 赴官學院應講 拔其優 而以擬官學院儒生抄選是齊. 一. 今此面講之設 非專爲讓書而已 欲其敦行孝梯成就學業 以培養人材之意 此在訓長教導勸獎之如何 各自勉勵 無或暴棄是齊. 一. 諸生中 容辭學止不端訪怠無有向善之志者 隨其輕重施罰離案不齒士是齊. 一. 官學院赴講時 各自齎糧齊. 一. 三十四面 官學院應講不能(同)日 府七面季月十五日 解四面十六日 守七面十七日 河四面十八日 花八坊十九日 角四面二十日 以此排是齊.

대구부는 慶尙 監營으로부터 ‘新設學校節目’을 전달받고 이를 바탕으로 대구향교의 ‘官學院節目’과 面學院에 해당하는 ‘各面勸學十二條’를 작성하여 예하 각 面에 내려 보냈다. 신설학교절목에는 郡・縣단위의 관학원까지 언급되어 있으며 면단위의 학교에 대해서는 洞里에 私塾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대구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官學院節目’과 면학원에 해당하는 ‘各面勸學十二條’의 근거로는 2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고종이 1986년 4월 19일 발표한 傳敎에서 “이제부터 마을과 동리에 편리한 대로 講舍를 세우고 젊고 똑똑하며 才德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학업을 가르치고 효도와 우애를 하도록 타일러야 할 것이다”⁵⁴⁾라고 하여 동리에 私塾이라 할 수 있는 講舍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新設學校節目’ 14조에 “미진한 사항은 추후 마련한다.”라는 조항을 두어 형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라는 규정이다. 이는 조선조에 상급관청이 각종 규칙을 하달할 때 일반적으로 명기하는 것으로, 각 지역의 조건에 따라 자율적 시행을 도모하라는 지침으로 볼 수 있다.⁵⁵⁾

다음 표는 ‘新設學校節目’의 관학원 규정과 대구부의 ‘官學院節目’과 面學院 규정인 各面勸學12條에 따른 교육 운영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표 2〉 官學院과 面學院 비교

구분	官學院(新設學校節目)	官學院(官學院節目)	面學院(各面勸學12條)
훈장	3인, 3달마다 교대	2인	1인, 인근지역 통할可
유생	15~20세 士・民子弟 定額 3년 수학 후 歸私塾 자비부담자 無定額	15~20세 12명, 3년 기한 4명씩 10일 거재, 한 달 3교대 자비부담자 無定額	15~20세 士・民子弟 無定額, 學案작성 入案者만 赴學(參榜해도 拔去, 30세 이상 무관)

54) 『高宗實錄』 23권, 고종 23년(1886) 4월 19일.

55) 김경용, 「19세기말 경장기 조선의 교육개혁과 ‘관학원록’」, 『교육사학연구』, 18: 1, 2007, 17쪽.

구분	官學院(新設學校節目)	官學院(官學院節目)	面學院(各面勸學12條)
교육장소	향교	관학원	강소
교육과정 및 考試	冬春：明經講義(七書) 夏秋：製述文字(詩賦表策) 月課：季考・歲試 季考：훈장 4인 합석 歲試：수령 주관	한 달에 세 차례 강회 ⁵⁶⁾ 月課：7書 중 1書 抽三 節問義 製述：하절기(3개월)에 詩・賦・表・策 考試	매월말 강회, 月課：관학원과 같음, 강서 내용 과 성적 기록, 製述：하절기 試藝 관학원 應講：4분기말 보름에 각 면학원 우등자 1, 2명 참가, 우수 자 관학원 유생 抄選, 참석자는 식량 지참
별치		무연고 불참자 削籍	품행 불량자 및 3회 불참자는 學案에서 削籍 이나 停學
재정	贍學錢 이용	養士齋, 鄕校 재정 수용	

이처럼 조선정부는 육영공원을 운영하여 시무를 전담하는 인재를 양성하기도 하면서도 아울러 전통교육 제도에 근간하여 국가 교육 체제를 정비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었다. 도성과 지방의 각 지역에서 講學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기관들을 계열화하고, 인재선발에서 지역적이고 신분적인 차별을 해소해가며 교육기관을 통해 양성된 인재를 선발하는 원칙을 수립하였다.⁵⁷⁾

그리고 ‘新設學校節目’ 체제는 전통교육제도를 講學을 중심으로 書堂－面學－官學院－營學院－京學院으로 계열적 체계를 갖춰 學院 체제로 정비하는 것이었다. 또한 講學과 선발을 겸하는 것이므로 京學院 교육과 관료로의 진출이 보장되어야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었다. 이 체제는 지방의 흥학책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운영된 곳도 있었다. 그러나 黃玪은 이 체제가 너무 복잡하여 실용성이 없었다고 한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⁸⁾

중앙의 京學院의 교육도 사부학당의 교수가 윤회하여 담당하였는데 나중에는 成均館 司藝를 증치하여 이들에게 경학원의 교육을 맡겼다. 다시 중학이나 동학의 교수도 윤회하여 맡을 수 있게 할 정도로 교수인원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⁵⁹⁾ 京學院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근대식 학교인 育英公院과 전통교육기관인 京學院 사이의 차별이 있어 보수 유림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掌令인 池錫永은 상소를 통해 성균관과 육영공원간의 재정적 차별을 지적하였다.⁶⁰⁾

“우리 왕조가 500년 동안 文을 숭상하며 풍속을 교화하는데, 지금 成均館의 東庠과 西庠에 식량을 공급하지 못해 머리 흰 進士들의 얼굴에 굶주린 빛이 감돌고 봄가을 제사 때 齋室이 모두 무너져서 烏

56) 『官學院錄』 「鄕飲酒禮韻」.

57) 구희진, 「갑오개혁 전후 전통교육제도에 대한 정책」, 『역사교육』 100, 2006, 205쪽.

58) 黃玪, 『梅泉野錄』 卷1 甲午以前 下.

59) 『日省錄』 高宗 24년 10월 27일; 『高宗實錄』 25권, 高宗 25년 8월 5일; 『高宗實錄』 25권, 高宗 25년 11월 17일) 등.

60) 『高宗實錄』 24권, 고종 24년(1887년) 3월 29일.

帽의 祭官들이 몸 붙일 곳을 찾느라 겨를이 없습니다. 반면 育英公院과 같은 곳은 대청이 환하고 방이 화려하며 教師에게 녹봉을 주고 교원들에게 음식을 줍니다. 누구는 굶주리게 하고 누구는 배불리 먹게 하며, 어디는 후하게 하고 어디는 박하게 하는 것입니까?”

지방의 官學院의 경우도 훈장의 임용, 교육의 내용, 재원의 마련 등에서 곤란을 겪고 있었다. 정부에서 官學院의 재원을 따로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유학 교육과 科學 준비에 중점을 둔 ‘新設學校節目’ 체제 교육은 당시 시대 변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도서기론자들은 교육의 내용에 科學에 필요한 것 외에 義理之學, 經濟之具, 貫道之器가 갖추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되기도 했다.⁶¹⁾

‘新設學校節目’은 전통교육을 전국적으로 계열화하고자 추진된 것이지만 전국적이고 전반적 실행을 어려웠다. 다만 종래 유학교육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함경도, 평안도 지방 등에서 전통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이 지역 인재들의 등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함경도의 경우는 官學院에서 경서를 공부한 유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과거의 정원수를 늘리기도 했다.⁶²⁾

평안도에서는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활발하게 講舍를 설립하자, 관찰사가 여기서 양성된 인재에게 도내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德行科라는 인재 선발제도를 신설했다. 관찰사로 부임한 閔丙奭은 기존의 과거제도가 덕행이 있는 사람을 얻는 효과가 없다고 비판하고, 평안도에 科學 해액 50명을 가설하는 德行科를 설립할 것을 상주하여 시행했다.⁶³⁾

新設學校節目의 시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자 1893년 2월에는 각도에서 자발적 의지로 응시하는 인물들 이외에 적극적으로 인재를 물색하여 특별히 교육시키고 이들 중에서 우수한 자를 발탁·등용하는 새로운 통로로 ‘太學規制’를 마련하였다.⁶⁴⁾

“전국의 各里에서는 社(面)로 各社에서는 邑(郡)으로 문학이 두드러진 인물을 추천하면, 각 지방관이 모두 모아 考試하여 적당한 인원수만큼 거점시키고, 太學의 경우처럼 고시하여(10일마다 2차례는 面講, 1차례는 製述面試, 한 달 세 차례 고시) 연말에 우등자를 관찰사에게 추천한다(대읍 3·4명, 소읍 1·2명). 관찰사는 이들을 모두 모아 面試하여 우등인을 太學에 추천하는데, 경상·충청·전라·평안·함경도는 각 3명, 경기·강원·황해도는 각 2명, 五都는 각 1명씩이다. 이후 성균관장의 지시가 있을 때 올려 보내 모두 面試로 講製하여 우등자 2명을 議政府로 천거하고 의정부는 啟文을 올려 需用하는 한편 나머지 인원은 生員·進士이면 대과 會試에 直赴하고 幼學이면 生員進士試 會試에 나아가게 한다.”⁶⁵⁾

61) 김윤식, 『續陰晴史』 3, 松坪鄉塾記 戊子 九月初一日.

62) 『高宗實錄』 29권, 高宗 29년(1892년) 12월 28일.

63) 『高宗實錄』 28권, 高宗 28년(1891년) 12월 30일.

64) 『高宗實錄』 30권, 高宗 30년(1893년) 2월 17일.

議政府 以謹依筵教 太學規制 與泮堂商議 成節目以入啓.

65) 오형목, 『慶尙道固城府叢錄』, 1893년 5월 7일.

‘太學規制’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는 이미 1893년 1월 24일에 비롯되었는데, 성균관과 각 지방의 학교에서 추천된 인물들 중에서 우수한 자를 등용하겠다는 취지였고,⁶⁶⁾ 이 취지를 살리는 구체적 시행 방향으로 2월 7일 儒生月課에 대한 의논을 거쳤다.⁶⁷⁾ 이어서 2월 17일 「太學規制」가 마련되었고, 3월 20일 성균관과 지방의 유생들에 대한 月課성적을 합산하여 우수한자 9명 1년에 3명씩 3년 통산을 식년 문과급제자 정원 33명에 포함시킨다는 결정을 하게 된다.⁶⁸⁾

이는 위에 소개한 ‘太學規制’ 중에서 등용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시행방침을 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후 성균관과 전국 각지에서 이에 따른 시행이 이루어졌다.⁶⁹⁾

이런 분위기 속에서 3월부터 儒生月課가 시작되었고 연말에 우수하다고 추천된 유생들을 대상으로 考試하여 그 중 4명이 賜第하였는데⁷⁰⁾ 전통적 과거제도로는 마지막으로 시행한 1894년 4월 式年 文科 及第榜目에 이들의 이름이 올라 있다.⁷¹⁾

‘太學規制’와 儒生月課 鄉貢保學에 의한 등용은 1882년 12월 지방 전통교육의 정비과정에서 실시되었던 鄉貢保學法이 그 기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新設學校節目으로 지방 학교에서 都城의 京學院까지 계열화가 추진되며 鄉貢保學法의 시행이 유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태학규제를 통해 邑에서 面으로 邑으로 다시 監營으로 이어지며 지방관이 考試하고 우수한 사람을 태학에 추천하는 방법은 향공보거법의 방법을 참작하여 新設學校節目을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갑오개혁 이후 새로운 관리등용제도를 제정할 때까지의 경과조치, 관리등용 방식의 일단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²⁾

1894년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어 이른바 근대적 개혁을 단행하면서 새로운 選舉制度를 담은 ‘銓考局條例’와 ‘選舉條例’를 반포하였다.⁷³⁾ 이를 통해 과거제를 대신하여 새로운 관리 등용법이 공포됨으로써 신분의 차별 없이 품행이 단정하고 재주와 기술이 있으며 시무를 아는 사람은 국문, 한문, 글자쓰기, 산술, 국내 정사, 외국 사정, 국내 사정, 외무 관계 등의 시험을 거쳐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시험과목 중에 국문이 포함되었다. 또한 학무아문을 설치하고 신학제 시행⁷⁴⁾으로 정부에서 小學校와 師範學校⁷⁵⁾ 등 근대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함에 따라 전통 학문으로 관료 진출을 기대하기가 점차 어려워 졌다.

개항 이후 지방의 전통교육 체제를 향공보거제와 더불어 계열화하면서 일부에서는 시무교육을 가미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갑오개혁이 단행되면서 과거제가 폐지되고 전통교육은 더 이상 효용가치가 감소되면

66) 『高宗實錄』 30권, 고종 30년(1893년) 1월 24일.

67) 『高宗實錄』 30권, 고종 30년(1893년) 2월 7일.

68) 『高宗實錄』 30권, 고종 30년(1893년) 3월 20일.

69) 『高宗實錄』 30권, 고종 30년(1893년) 12월 3일.

70) 『高宗實錄』 30권, 고종 30년(1893년) 12월 24일.

71) 김경용, 「갑오경장 이후 성균관경학과와 經義問對 연구」, 『교육사학연구』 21: 1, 2011, 6~8쪽.

72) 김경용, 「更張期 조선, 관리등용제도 개혁과 成均館 經學科」, 『한국교육사학』 31, 2009, 8~11쪽.

73) 『高宗實錄』 32권, 고종 31년(1894년) 7월 12일, 銓考局條例, 選舉條例.

74) 『高宗實錄』 32권, 고종 31년(1894년) 6월 28일.

75) 『官報』, 1895년 7월 24일, 漢城師範學校規則.

서 새로운 지형으로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향교는 국초부터 지방 전통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었다. 그러나 갑오개혁이 단행 된 후에는 관료 선발을 위한 교육의 기능을 상실하고 향사 기능만 전담하게 되었다. 이 때 정부에서는 지방에 공립 소학교를 설립하면서 이에 대한 재원을 향교와 부속 시설을 통해 해결하려하였다.⁷⁶⁾ 그 결과, 전국 대부분의 공립소학교가 鄕校財産과 院土를 기본재원으로 하고 有志와 地方官의 보조금으로 운영되었다.⁷⁷⁾ 또한 신학제 개혁 직후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아예 향교의 시설을 이용하여 신학문을 교육하는 공립소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도 증가되어갔다.⁷⁸⁾

V. 결 론

조선정부는 개항을 전후하여 서구 신기술과 문물이 전래되며 동도서기론적 입장에서 개화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신식교육 기관을 설립하며 외국과 통역이나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관리를 양성하고자 했다.

개화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전통교육의 위상이 약화되기 시작하였지만 정부에서는 과거제의 폐단을 절감하면서 鄕貢保學法을 통해 지역의 인재를 선발을 시도하였다. 또 「鄕學條例」를 통해 향촌의 리, 면, 군단위 소학교를 설립하여 이를 계열화하여 교육하고 여기서 양성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을 규정하였다. 이는 관립 교육기관인 鄕校가 지방 교육을 주도하도록 재정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함경도 덕원부 원산의 교영재는 함경도의 과거 초시인 공도회 해액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鄕校나 養士齋 등에서 실시한 전통적 교육 과정에 시무 교육을 가미하여 개량된 형태로 세워진 養士齋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조선정부는 한편에서는 육영공원을 운영하여 시무를 전담하는 인재를 양성하기도 하면서도 아울러 전통교육 제도에 근간하여 각 지역의 교육기관들을 계열화하였다. 따라서 新設學校節目 체제는 전통교육제도를 講學을 중심으로 書堂-面學-官學院-營學院-京學院으로 계열적 체계를 갖춰 각 學院 체제로 정비하는 것이었다.

1893년 실시된 ‘太學規制’와 儒生月課 鄕貢保學에 의한 등용은 지방의 리에서 面으로 다시 邑으로 다시 觀察使로 이어지며 지방관이 考試하고 우등자를 태학에 추천하는 방법은 新設學校節目의 변형으로 볼 수도 있다.

조선 정부는 개항 후에도 지방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계열화된 전통적 교육제도를 실시하면서 시무교육을 가미하였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으로 군국기무처에서 전고국 조례와 선거 조례를 발표하며 선거제도 성격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따라서 지방에서는 더 이상 전통교육을 통해 관료 배출이 어려워지게 되자 교육

76) 『官報』開國 504년(1895년) 7월 22일, 小學校令, 勅令 第145號.

77) 『皇城新聞』, 1899년 2월 20일, 教育急務, 1900년 2월 17일, 教育經費.

78) 권대웅, 「한말 경북지방의 사립학교와 그 성격」, 『국사관논총』 58, 1994, 34~38쪽.

체제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 향교의 재원이나 시설을 활용하여 공립 소학교나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났다.

〈참고문헌〉

-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官報』
 『春城府志』, 1885,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官學院錄』, 1886,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皇城新聞」
 『朝鮮紳士寶鑑』, 국사편찬위원회.
 『赤城誌』, 1898, 규장각 소장.
 『朝鮮社會史資料』 2. 公州, 「營學院居齋節目」.
 김윤식, 『續陰晴史』.
 오형목, 『慶尙道固城府叢錄』, 1893.
 黃玹, 『梅泉野錄』
 『湖南邑誌』, 규장각 소장, 1899.
 『古文書集成』 62, 牒關通報類,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釜山慶南鄉校記文』, 부산산업대, 1986.
- 강대민, 「조선 후기 養士齋 構成員의 身分에 관한 소고」, 『문화전통논집』 3, 1995.
 구희진, 「갑오개혁 전후 전통교육제도에 대한 정책」, 『역사교육』 100, 2006.
 권대웅, 「한말 경북지방의 사립학교와 그 성격」, 『국사관논총』 58, 1994.
 김경용, 「19세기말 경장기 조선의 교육개혁과 ‘관학원록」, 『교육사학연구』, 18: 1, 2007.
 김경용, 「更張期 조선, 관리등용제도 개혁과 成均館 經學科」, 『한국교육사학』 31, 2009.
 김경용, 「갑오경장 이후 성균관경학과와 經義問對 연구」, 『교육사학연구』 21: 1, 2011.
 신용하, 「우리나라 最初의 近代學校 設立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10, 1974.
 우용제, 「대원군 집정기의 서원철폐와 성균관 정비계획」, 『교육사학연구』, 제2·3집, 1990.
 이성심, 『조선후기 지방교육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2017.
 정재걸, 「한국근대교육의 기점에 관한 연구」, 『교육사학연구』 2·3집, 1990.

* 이 논문은 2018년 11월 23일에 투고되어,
2018년 12월 19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1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월 1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Traditional Education System after Opening Port

KIM, TaeKeun*

From 1876, just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 until 1894, when the past was abolished by the reform of the Gap-O, the nature of local traditional education changed, the traditional education of the province went through several maintenance courses.

After the opening of the late Joseon Dynasty, western cultures were introduced and the status of traditional education began to weaken relatively. Heungseon Daewon-gun, Chosun, organized the vows and tried to strengthen the status of the local government agencies represented by the two companies. After opening the port, we tried to select local talent through 'New Rules on government service appointment(鄉貢保學法)' while reducing the abolition of the past. In addition, through the 'Rules for Country Districts Education(鄉學條例)', the school was established on the Village, Community, County of the local village, and the regulations were set up to educate and educate the students.

Wonsan Community School(教英齋(원산학사)) of Wonsan in Deokwon-County, Hamgyeong Province are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have been improved by carrying out practical training necessary for the reality in the traditional education process. In addition, education and examinations were conduc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past examinations of Hamgyeong province.

Therefore, it can be seen as a kind of 'Community School(養士齋)' establish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rather than a modern school, attached to the religions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y School(鄉校).

The Chosun government also consolid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each region based on the traditional education system, and tried to select talented people by eliminating regional and identifiable discrimination. The 'Rules on establishment of school(新設學校節目)' system was to maintain the traditional education system with a series of schools(Village School(里塾), Community School(面學), County School(官學院), Provincial School(營學院), Capital School(京學院)), mainly

* Doctoral Candidate, Dankook University

lectures. The ‘Rules on Grand School(太學規制)’ and ‘New Rules on government service appointment(鄉貢保學法), Student of Confucianism’s Monthly Exam(儒生月課), which was carried out in 1893, can be regarded as a modification of the ‘Rules on establishment of school(新設學校節目)’ system because it led to the governor again from the village to the county, and the provincial government evaluated the excellent person and recommended the excellent person to Grand School(태학). In 1894, the government service appointment system(科擧制度) was abolished, making it difficult to discharge bureaucrats through traditional education in the provinces, and it was forced to seek changes in the local education system and contents.

[Key Words] Regulations for Grand School(太學別單), Rules for Country Districts Education(鄉學條例), Rules on establishment of school(新設學校節目), Rules on Grand School(太學規制), the government service appointment system(科擧制度), New Rules on government service appointment(鄉貢保學法), Wonsan Community School(教英齋), Capital School(京學院), Provincial School(營學院), County School(官學院), Community School(面學, 養士齋), Village School(里塾)